

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7조제2항·제3항에 따라 임원을 선임 또는”을 “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임원을”로, “할 때에는”을 “한 경우에는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”로, “선임 또는 해임일”을 “사유발생일 또는 해임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임원을 선임한 경우: 임원”을 “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경우: 임원(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을 포함한다)”으로, “임원의”를 “그 사유, 임원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임원을 선임”을 “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선임한”을 “법 제7조제1항 각 호의”로, “사실”을 “사실과 그 사유”로, “업무범위”를 “업무범위(책무구조도상 정하는 자신의 책무가 있는 경우 해당 책무 포함)”로 한다.

제5조제5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법 제22조의2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(이하 “내부통제위원회”라 한다)의 활동 내역

제11조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내부통제등 관리의무) 영 제25조의2제2항제4호에서 “그 밖에

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”란 담당 업무에서 임원에 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말하며, 해당 부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.

제14조의3(책무구조도) ①법 제30조의3제5항제4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
1. 책무구조도에 오류가 있는 경우
2. 책무구조도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
② 대표이사등은 법 제30조의3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작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.

1. 대표이사등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별로 책무의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(이하 “책무기술서”라 한다)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표(이하 “책무체계도”라 한다)를 작성한다.
2. 책무기술서와 책무체계도의 내용은 일치하여야 하며 각 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작성해야 한다.
3. 대표이사등은 임원의 책무 현황을 일괄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도식화하여 책무체계도를 작성하여야 한다.
4. 책무기술서에는 소관부서, 겸직 여부·내용, 주관회의체, 유관법령, 소관내규 등을 포함한 임원 및 직책의 기본정보, 책무의 상세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5. 책무체계도에는 임원별 성명, 직책, 책무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제출기간은 이사회 의결
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외국금융
회사 국내지점은 영 제25조의3제4항에 따른 내부 의사결정기구 의결
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로 한다.

④ 그 밖에 책무구조도 작성·제출과 관련된 절차, 방법 등 필요한 사
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.

별표 2 제7호 중 “「상법」”을 “「상법」, 「형법」”로, “금융관계법령”
을 “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, 영 제25조의3제1항의 법령”으
로, “법률에”를 “법률을 의미하며, 각 법률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금
융업 영위와 관련된 사항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1. 선임한 경우: 성명 및 인적사항,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, 임기 및 업무범위에 대한 사항

2. (생략)

③ (생략)

제5조(지배구조내부규범 작성 및 공시) ① ~ ④ (생략)

⑤ 금융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, 그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(이하 “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작성기준”이라 한다)은 각 금융회사가 속한 관련협회등의 장이 정할 수 있다.

1. ~ 7. (생략)

<신설>

8.·9. (생략)

제11조(내부통제기준 등) ① ~ ④ (생략)

1.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-----

----- 사실과 그 사유-----

----- 업무범위(책무구조도상 정하는 자신의 책무가 있는 경우 해당 책무 포함)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지배구조내부규범 작성 및 공시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-----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8. 법 제22조의2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(이하 “내부통제위원회”라 한다)의 활동 내역

9.·10. (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)

제11조(내부통제기준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대표이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부통제 체계·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체계·운영에 대한 실태점검 및 이사회 보고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⑥ (생략)

⑦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매반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할 것

2.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준법감시인, 위험관리책임자 및 그 밖에 내부통제 관련 업무 담당 임원을 위원으로 할 것

3. 다음 각 목의 역할을 수행할 것

가. 내부통제 점검결과의 공유 및 임직원 평가 반영 등 개선방안 검토

나.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

<삭 제>

⑥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응방안 마련

다.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

협약

라. 임직원의 윤리의식·준법

의식 제고 노력

4. 회의결과를 의사록으로 작성

하여 보관할 것

<신 설>

<신 설>

제14조의2(내부통제등 관리의무)

영 제25조의2제2항제4호에서 “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”란 담당 업무에서 임원에 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말하며, 해당 부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.

제14조의3(책무구조도) ①법 제30

조의3제5항제4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
1. 책무구조도에 오류가 있는 경우
2. 책무구조도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
② 대표이사등은 법 제30조의3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작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

여야 한다.

1. 대표이사등은 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원별로 책무의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(이하 “책무기술서”라 한다)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표(이하 “책무체계도”라 한다)를 작성한다.

2. 책무기술서와 책무체계도의 내용은 일치하여야 하며 각 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작성해야 한다.

3. 대표이사등은 임원의 책무 현황을 일괄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도식화하여 책무체계도를 작성하여야 한다.

4. 책무기술서에는 소관부서, 겸직 여부·내용, 주관회의체, 유관법령, 소관내규 등을 포함한 임원 및 직책의 기본정보, 책무의 상세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5. 책무체계도에는 임원별 성명, 직책, 책무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
채무구조도의 제출기간은 이사
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
로 한다. 다만, 법 제3조제2항
에 따른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
은 영 제25조의3제4항에 따른
내부 의사결정기구 의결일로부
터 7영업일 이내로 한다.

④ 그 밖에 채무구조도 작성·제
출과 관련된 절차, 방법 등 필요
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.